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제정일 : 2001.03.01
직전 개정일 : 2021.04.20
최종 개정일 : 2024.09.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이론과 응용분야를 연구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지도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교육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정 및 전공

제2조 (과정)

① 본 대학원은 학위과정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2. 박사학위과정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

② 비학위과정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2. 기타 특별단기 공개 교육과정

제2조의 2 (BK21플러스 사업단)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BK21플러스 사업 선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BK21플러스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제2조의 3 (협동과정)

본 대학원에 본원과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과정') 및 본원과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산·관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조의 4 (연계과정)

본 대학원에 본교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연계하는 학부 대학원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원 및 과정)

①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44명, 박사학위과정 9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의 정원은 약간 명으로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공명칭은 사회복지학전공으로 한다.

③ 세부관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은 두 개 이상의 분야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1. 가족청소년복지·군사회복지
2. 노동과 산업복지
3. 노인복지와 세대공존
4. Philanthropy·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
5. 사회보장·주거복지
6. 사회복지조직관리기획평가
7. 장애인복지·취약계층복지
8. 정신보건·의료사회복지
9. <삭제>
10. 여성복지·다문화·빈곤

④ 제1세부관심분야는 학생이 선택하되,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제1세부관심분야는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3장 입학

제4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제5조 (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③ 석•박사 통합과정 : 동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6조 (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에 의한 수시 전형으로 한다.

제7조 (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편입학)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편입학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시기, 전형방법 및 절차는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제9조 (정원외 입학)

외국인 등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규정의 적용은 대학원 학칙 및 제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 (등록)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 후 4학기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입학 후 6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석사학위만 취득할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②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연계과정을 통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제11조 (등록학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다.

제13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

연구과정은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및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휴학 최대 학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
2.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되, 최대 4학기로 한다.

제14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6조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3항, 제16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18조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석·박사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폐강 및 추가개설)

① 개설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계절 학기를 두어 추가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 (이수과목)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학위과정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공통과목과 전공심화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교과목 종별은 공통기초과목, 공통필수과목, 공통선택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으로 구성한다.

④ 사회복지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총 9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통기초과목의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재가로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수면제된 과목은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공통필수과목 6학점과 전공기초과목 6학점에 대하여 일반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21조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42학점으로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63학점으로 한다.

② 개별지도연구(Independent Study)에 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1조의 2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 (학기당 수강학점)

각 학위과정별 학기당 수강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학업평가 및 재수강)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A-, B+ ,B0, B-, C+, C0, C-, F, W, P, NP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설 명
A+	4.3	우 수
A0	4.0	
A-	3.7	
B+	3.3	우 량
B0	3.0	
B-	2.7	
C+	2.3	양 호
C0	2.0	
C-	1.7	
F	0	불 량
W	0	Withdraw
P, NP	0	청강·연구

② 동일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제23조의 2 (평가보류 제도)

현장실습 과목에 한하여 평가보류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보류 조건: 학사일정의 성적보고 기간과 해당 과목의 운영기간과의 불일치로 성적보고 기간 내에 성적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성적에 “I”(Incomplete)를 부여
2. 평가보류 과목에 대한 성적 제출 시한: 담당교수는 해당학기 종료일까지 성적평가 결과를 사회복지대학원에 제출
3. 학기 종료일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성적 처리: 담당교수가 해당학기 종료일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I’는 ‘F’ 학점으로 기재함

① 본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에 승인받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의 경우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 자료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⑤ 교무처장은 본조를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성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경우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수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1.7)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평량평균은 3.0(B0)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 (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 취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논문자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26조 (논문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

①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논문에 준한다.

⑤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6조의 2 (논문제출시한)

① 석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석·박사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휴학 및 제적 기간은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7조 (학위논문)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8조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1. 사회복지학 석사(Master of Social Welfare : M.S.W.)
2. 사회복지학 박사(Ph.D. in Social Welfare)

②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과정이수를 중단하더라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관련 절차를 완료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과의 협약에 의하여 해외 대학(원)에서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협약 및 내규에 따른다.

제28조의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4.12.>

제7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29조 (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0조 (연구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31조 (실적증명)
본 대학원 연구과정에 1년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2조 (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8장 상 벌

제33조 (장학금 지급)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조 직

제35조 (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6조 (전공 주임교수)
① 본 대학원의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전공에는 전공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전공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며, 이 외에 원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운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 및 업무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 (겸임교수 및 객원교수)

<삭제>

제39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신설과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본원의 규정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연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대학원위원회 규정」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4.12.>

제40조 (운영위원회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운영위원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될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사회복지연구소)

<삭제>

제43조 (사회복지대학원 발전위원회)

본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교내외 인사로 구성된 사회복지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장 준용규정

제44조 (준용규정)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과 연세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11장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2조, 제 3조 2호 내지 5호, 제 5조 3호, 제 10조 1항 내지 4항, 제 13조 2항, 제 18조 2항, 제 21조 1항, 제 26조 2항 내지 5항, 제 37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3조 1항)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2조, 제 2조의 2, 제 3조 1항, 1호 내지 2호, 2항, 5항, 제 6조, 제 10조, 제13조 1항 및 2항, 제 21조, 제 23조 1항, 제 26조 1항, 2항, 3항, 제 26조의 2, 제 38조 1항, 제 44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이 학칙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3조 제2항, 제 10조 제1항, 제 18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6조, 제13조 제1항)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28조의2, 제39조의2)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1항 및 2항, 13조 3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5항, 제28조)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3항)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의 2, 제3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 2, 제40조, 제41조, 제42조)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2조, 제2조의 3, 제2조의 4, 제3조 3항 내지 제7항, 제6조, 제10조 1항, 제10조 5항, 제20조 3항 내지 4항, 제21조 1항, 제21조의 2, 제6장, 제26조 1항, 제26조 5항, 제39조 1호)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9학년도 8월 이전 입학생에

게는 개정 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1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33조)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3조의 3)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0조의 5, 제37조의 2)은 2021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조3항1호~4호, 7호,9호 제20조4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고, 제3조3항5호는 202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1세부관심분야 변경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17.05.23
직전 개정일 : 2019.09.01
개정일 : 2021.08.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제1세부관심분야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 신청)

① 사회복지대학원 학생은 제1세부관심분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과정은 제1세부관심분야 확정 후 1회에 한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행정팀에서 신청서식을 교부받아 작성하여 학기 3분의 2선이 포함되는 주간에 제출한다.

제3조(승인 절차)

운영위원회는 세부관심분야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하며, 변경 신청서에 대한 원장의 승인 결재로써 가부를 확정한다. 단, 원장의 승인 결재 전에 해당 지도교수들의 동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2조 제1항)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세칙명, 제1조, 제2조)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어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17.05.23
개정일 : 2024.09.0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논문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 인정 범위)

① 외국어시험은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인 영어능력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공인 영어능력시험	기준 점수
토플(IBT)	88
토플(CBT)	230
토플(PBT)	570
토익	800
New텝스	392

②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는 입학 학기 또는 논문자격시험 응시 학기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는 제출 학기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

제3조(기타 면제 사유)

① 입학 후 SSCI급 저널에 주저자 혹은 3인 이내 공저 논문을 게재한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단, 교내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영어권 국가 대학에서 정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영어자체시험에 응시하여 8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아야 한다.

② 단, 영어자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 점수는 토플(IBT) 75점, 토플(CBT) 200점, 토플(PBT) 500점, 토익 630점, New텝스 285점 이상이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도교수의 요청 및 원장의 승인에 의해 영어자체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대체 강좌)

①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영어자체시험도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영어 대체 강좌' 이수로써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해당 강좌 수강 및 이수 요건 등에 대해서는 외국어학당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6조)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19.09.01.
개정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논문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① 석사과정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논문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시험응시여부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된다.

1. 총 이수학점 36학점 이상(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이수 포함)
2. 총 평량평균 3.0 이상
3. <삭제>
4. 공통기초과목(9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면제 받은 자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논문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시험응시여부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된다.

1. 학술논문 게재 및 발표기준을 충족한자 [별표1]
2. 박사과정은 42학점 이상 이수, 석·박사 통합과정은 63학점 이상 이수
3. 총 평량평균 3.0 이상
4.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5. 공통기초과목(9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면제 받은 자

③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종합시험과 논문심사를 같은 학기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재학생에 한한다.

제3조(합격기준)

① 석사과정 논문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8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고 과목별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필기시험과목은 제1세부전공과목, 연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자료분석론)으로 출제한다.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논문자격시험은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근거로 구술시험을 실시하며 8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제4조(시험의 면제) ① 석사과정의 논문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누적점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1] 참조

1.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누적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 종합시험 면제
2.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누적점수 4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연구방법론 시험 면제

② 박사과정은 논문자격시험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8월 이전 입학생에게는 본 시행세칙 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4항, 제3조 제1항)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3항)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 응시를 위한 학술논문 게재 및 발표기준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단독 저자로 학술논문 1편 이상 게재
※ 단독 저자의 의미
- 종합시험 대상자 1인이 작성한 논문
- 종합시험 대상자 1인과 연세대학교 전임교원 1인의 2인 공저 논문

② 영어로 작성된 학술논문 1편 이상 게재

③ 학술논문 4편 이상 게재 (학술발표 미포함, SSCI급 1편은 2편으로 인정)

④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누적점수 200점 이상

외국인 학생의 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 응시기준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학술논문 2편 이상 게재 (학술발표 미포함, SSCI급은 2편으로 인정)

②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누적점수 120점 이상

■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배점기준

① 단독(100점), 2인 공저(70점), 3인 공저(50점), 4인 공저(40점), 5인 이상 공저(30점)

② SSCI급 : 편수 기준 2편, 점수 기준 300% 인정

③ BK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의 구술발표는 1/2 인정(발표자에 한함)

■ 학술논문 기준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③ SSCI급 학술지

④ 심사를 거치는 국제학술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19.10.31.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적용범위) 본 대학원 소속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심의 및 확정) 각종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고 원장이 승인하여 확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신설, 폐지, 개편 등에 관한 정책
2.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지급금액 등
3. 장학대상자 심의 및 장학생 선발
4. 기타 장학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조 (장학금 지급대상)
1.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본 대학원의 학칙을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 장학금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2.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휴학하거나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장학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복학이나 재입학 시에는 장학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제6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요건)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으며, 장학금별 수혜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별 지급액 및 인원은 본 대학원의 장학금 재원을 고려하여 매 학기 위원회가 정한다.

1. 성적우수장학금 : 본 대학원 재학생 중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이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이어야 한다.

가. 우수신입생장학금

1)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선도적 사회복지전문가 및 학자로서의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세부관심분야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이 장학금은 입학 후 최대 2개 학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연구조교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조사연구에 참여하여 전문연구자로서

의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성적우수 재학생장학금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탁자의 기부조건 및 취지에 적합한 자에게 지급한다.

라. 연계과정장학금

1) 본 대학원의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이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입학모집요강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2. 저소득층장학금

본 대학원 학칙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가계곤란으로 학업수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근로장학금

본 대학원에서 수행하는 학사 및 기타 업무 등을 보조하는 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근로장학생은 수행업무의 담당교수 또는 부서에서 정하는 일정 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교육조교장학금

1) 재학생 중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수업을 보조하고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로서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조교로 선발된 자는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학기 중 최소 100시간 이상의 근무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 감독은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한다.

나. 행정조교장학금

1) 본 대학원의 교내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학업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조교로 선발된 자는 근무지에 정규 출근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최소 100시간 이상의 근무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 감독은 부원장 또는 해당 업무의 담당교수가 한다.

4. 교직원장학금

본 대학 재적 교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장학금

가. 기금장학금

1) 본 대학원의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장학기금의 기부자 및 장학단체가 지정 또는 추천한 자

2) 기부자 및 기부단체가 정한 별도의 장학금 지급자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 기부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심의하고 원장이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특별장학금(공로)

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군위탁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생 중 관계 법령 또는 군협약에 따라 군복무 중 위탁교육을 받는 자

라. 외국인학생 장학금

본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 재학생으로서 학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학업 및 연구활동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마. 연구활동지원장학금

본 대학원의 정책에 따라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입증한 대학원생에게 교재비, 학술대회 참여경비, 논문교정비 등의 연구활동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BK21장학금) BK21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등) 지급단체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세칙

제정일: 2021.04.2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과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기관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젼 제공, 실습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된다.

③ 대학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평가한다.

제3조(실습세미나)

① 실습세미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회당 2시간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이상 실시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한다.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40명 이내여야 하며, 40명 이상일 때 분반한다.

제4조(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자는 기관실습 개시일 이전에 실습세미나를 통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전교육시간은 기관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실습생의 문제로 현장실습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실습세미나 교수, 실습기관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실습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생의 기 이수한 실습기간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중도 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의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③ 실습생의 개인의 질병, 사고, 사회복지기관 폐쇄, 감염병 등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복지 기관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원활한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유사한 기관으로 이전 조치한다. 다만 이전할 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습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생에게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실습 시간 160시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수강중인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5조(기관실습 운영기준)

① 기관실습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진행한다.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가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는 5명 이내이다.
4.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경우, 기초, 심화 실습 중 하나는 위의 규정에 따르는 실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다른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할 경우, 지도교수, 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선 전학기 방학중 또는 개설된 학기중에 160시간을 실시한다. 1학기는 전년도 12월초-당해년도 6월말까지, 2학기는 6월초-12월말까지 실시한다(단, 시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지도교수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④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⑤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습비)

①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납부한다.

②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실습비 이상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 인정 및 인정절차)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점으로 한다.

② 성적은 실습기관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실습기관은 실습이 종료된 후 담당교수에게 실습생의 실습 평가서를 송부한다.

제8조(지원 및 선발)

① 사회복지실습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부생,학부전공생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전에 4개 학기 차 이상을 이수한 자
2. 복수전공자, 편입생, 대학원생 :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자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를 학과장,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대상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전실습 이후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대학원장, 담당지도교수, 실습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 강의시간 인정)

①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사간은 3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1조(실습진행절차)

구체적인 실습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지 선정	기관분석 및 실습목표 설정	실습진행 및 기관방문	실습세미나 강의	학점부여
시기	5월초/ 11월초	5월-6월 셋째주 11월-12월 셋째주	6월 넷째주 12월 넷째주	방학중/학기중	학기중	학기말
내용	실습의 의의 실습지 안내 실습진행절차	실습생프로파일작성 실습지 확정	기관분석 실습목표발표	160시간실습 실습기관방문	15회 2시간이상 세미나	실습기관 평가서 및 실습교수평가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